

해상특수경비원 교육과정 개발 연구

두현욱* · 안영중** · 조소현**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A Study on Development of Training Course for Maritime Security Operative

Hyun-Wook Doo* · Young-Joong Ahn** · So-Hyun Jo**

*, ** Korea Institute of Maritime & Fisheries Technology, 367 Haeyang-ro, Yeongdo-gu, Busan, Korea

핵심용어 : 해적, 해적피해예방법, 해상특수경비원, 국제해사기구, 위험해역

Key words : Piracy, Act to Prevent Piracy Attacks on the International Ships, Maritime Security Officer,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igh Risk Area

1. 서론

이 연구에서는 해적피해예방법 시행에 따라 국내법에 새로 도입되는 해상보안보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상보안요원에 대한 IMO 문서, ISO 기준 및 현재 일부 국가에서 국내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상보안요원에 관한 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해상특수경비원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대부분의 해상특수경비원은 선상 경험이 전무하고 무기사용 훈련은 군사훈련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기교육범위로 한정한다.

2. 해적피해예방법의 해상특수경비원 제도

Table 1. Draft Mandate Training for Maritime Security Operative (MSO)

Training	Duration	Validity (Year)
Basic Safety Training	4.5 days (2 days for retraining)	5 Y
Medical Care Person Training	5 days (2 days for retraining)	5 Y
Ship Security Officer Training	2 days	N/A
Maritime Security Officer Training	3 days (1 days for retraining)	5 Y
Firearms Use Training	5 days (3 days for retraining)	1 Y

3. 해상특수경비원 교육과정 개발

현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해상특수경비원 교육요건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ISO 28007에서 요구하는 해상특수경비업체의 교육요건과 비교하여 상당부분은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전 원칙은 일반적으로 각 해상특수경비업체 마다 상이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표준화된 교육제공의 한계가 있다.

둘째, 해상특수경비원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선장과 해상특수경비원과의 현장 관행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셋째, 최근에 발생한 해상특수경비원의 사고를 보면 마약으로 의심되는 약물복용에 의한 사망사고가 있으며 ISO 28007도 선내 알코올 및 마약 등에 관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교육을 해상특수경비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4. 한국형 해상특수경비원 교육과정 개발

해외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 사례, IMO 문서 및 ISO 28007의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국내에서 요구되는 법정교육과정 분석 등을 통해서 기존의 교과목들과 중복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제기준을 반영한 한국형 해상특수경비원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더불어 동 교육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무경험이 많은 국내 해상특수경비원 참여가 요구된다.

* 대표저자 : 종신회원, hwdo@seaman.or.kr, 051-620-5838

** 종신회원 : yjahn@seaman.or.kr, 051-620-5795

*** 교신저자 : 정회원, calmseas0905@seaman.or.kr, 051-620-5806